

비비탄총 사고 방지를 위해, 불법 개조를 막는다

“
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장난감 비비탄총 불법개조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탄속제한장치와 관련하여, 부착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11월 2일 비비탄총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하였다.

- 탄속제한장치란 비비탄총의 발사에너지(공기압, 가스압)를 낮추기 위해 노즐 등에 부착하는 실리콘 고무나 금속류의 작은 부품(발사 방해물)을 말함.

[탄속제한장치 사진]



-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비비탄총 안전기준에서는 장난감 비비탄총의 발사에너지 기준을 0.2J(줄) 이하(성인용 0.2J 이하, 청소년용 0.14J 이하)로 관리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해외에서 제작한, 주용도가 서바이벌 스포츠인 에어소프트 스포츠총(발사에너지 0.5~1.5J)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제품에 탄속제한장치를 부착해 발사에너지를 0.2J 이하로 낮춘 뒤 장난감총으로 인증 받아 판매하고 있음.
- 그러나 탄속제한장치의 부착이 견고하지 않아, 소비자들이 탄속제한장치를 제거하거나 노즐을 통째로 교체하는 등 발사 위력을 높이기 위해 임의로 개조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음.

- 국가기술표준원은 비비탄총에 탄속제한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쉽게 제거되지 않도록, 부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안전기준개정(안)을 마련하여, 2021년 5월부터 시행함.
- 신설된 안전요건에 따라 수입업체 등은 탄속제한장치가 제품에서 분리되지 않게 견고하게 부착해야 하며, 탄속제한장치 부착 여부와 부착 위치를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함.
- 또한, ‘누구든 탄속제한장치를 제거·변경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’는 주의사항을 제품에 명시하도록 함.

- 한편, 사용자들이 수입 비비탄총의 탄속제한장치를 제거하거나 개조하는 주목적은 서바이벌 스포츠 등 레저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이어서,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정부 부처간 협의해왔음.
- 이에 따라,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바이벌 스포츠 등을 관리하는 「육상레저스포츠법(가칭)」을 제정할 계획이며, 이를 근거로 경찰청은 서바이벌 게임장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발사에너지 0.2J 이상의 스포츠총의 제조·수입·사용을 허용하기로 함.
- *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약칭 총포화약법)」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5의2에 따라 겉모양이 총포와 유사하거나 발사에너지가 0.2J를 초과하는 경우 모의총포로 분류되어 제조·판매·소지 금지
- 향후 스포츠총에 대한 관련 법률이 정비되면, 국가기술표준원은 장난감총의 불법 개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비비탄총에 탄속제한장치 부착 자체를 금지하고 0.2J 이하의 발사에너지로 제작된 제품만 장난감총으로 판매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할 계획

- 국가기술표준원은 “이번 안전기준 강화를 통해서 장난감 비비탄총의 불법 개조와 그로 인한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하기를 기대하며,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준의 강화 못지 않게 안전한 사용도 매우 중요하다”고 강조하였음.

[참고] 비비탄총 관련 사고 유형 및 설문조사 결과

- **(사고유형)** 최근 5년간('15.1월~'19.12월) 비비탄총 관련 사고를 분석한 결과,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지만, 사용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.
- 비비탄총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각막 손상 등 병원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수준이어서, 사용 장소 제한,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, 단속·처벌 규정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
-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비비탄총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관리하고 있으나, 비비탄총의 '안전한 사용' 문제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, 그간 사용 전반에 대한 개선 민원이 국표원으로 다수 제기

[사용 중 발생한 사고]

	발사로 인한 상해 (46건, 14%)		탄환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 (279건, 86%)	
'15~'19년간 총 325건	눈 (각막 손상 등)	91%	탄환이 코에 들어감	56%
	얼굴 (치아 손상 등)	7%	탄환이 귀에 들어감	43%
	하체 (명, 찰과상 등)	2%	기타(삼킴 등)	1%

출처 : 한국소비자원, 제품안전관리센터, 경찰청

- **(설문결과)**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공동으로 대국민 설문('20.9.16~9.25,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및 네이버앱, 총 2,618건)을 실시
- 응답자 대부분이 비비탄총 사용 장소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으며, 서바이벌 게임장 등 스포츠 시설 확충과, 사용자 교육, 법규 미준수 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

찬반 투표 (2,618건)	질 문	찬성(%)	반대(%)
문항 1	미성년자의 비비탄총 사용장소 제한 필요	66.9	33.1
문항 2	미성년자의 비비탄총 사용 금지 필요	46.8	53.2
문항 3	서바이벌 스포츠총 사용·보관 장소 제한 필요	27.8	72.2
문항 4	놀이시설 마련 필요	85.6	14.4

◆ 출처 :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(2020. 10. 30.)